

기상요소별 관측방법

제 정 2006. 6. 30 기상청고시 제2006-31호
일부개정 2009. 8. 24 기상청고시 제2009-1호
(일몰제 도입을 위한 「기상요소별 관측방법」 등 일부개정)
일부개정 2012. 8. 23 기상청고시 제2012-1호
(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)
일부개정 2014.12.17 기상청고시 제2014-11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상요소별 관측방법)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온, 풍향, 풍속, 강수량, 강수유무, 기압, 습도, 지면온도, 지중온도, 초상온도, 일사, 일조는 자동관측한다.
2. 적설, 시정, 운고, 운량은 자동관측 또는 눈(目)으로 관측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, 증발량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,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2.8.23>
[본조신설 2009.8.24]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06-31호, 2006.6.30>

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09-1호, 2009.8.24>

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12-1호, 2012.8.23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기상청고시 제2014-11호, 2014. 12. 17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